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항건설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국토교통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2명(5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7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관할구역 등의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하여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및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6. 00. ~ 6.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5항 중 “2026년 6월 30일”을 “2028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1의 지방 국토 관리청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관할 구역란 중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북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 항공청	서울지방항공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흑산 공항개발 기본계획에 따른 흑산공항 건설에 관한 사무에 한정한다)
	부산지방항공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흑산 공항개발 기본계획에 따른 흑산공항 건설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다),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지방항공청	제주특별자치도

별표 2의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의 광주국토관리사무소를 다음과 같이 한다.

광주국토 관리사무소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목포시, 나주시, 영광군, 장성군, 담양군, 함평군, 무안군, 화순군, 신안군, 영암군, 진도군, 해남군, 완도군, 강진군(강진읍 동성리, 움천면, 작천면, 병영면, 군동면, 칠량면, 대구면, 마량면은 제외한다)
---------------	-------------------	---

별표 2의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의 순천국토관리사무소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순천국토 관리사무소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 순천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고흥군, 강진군(강진읍 동성리, 움천면, 작천면, 병영면, 군동면, 칠량면, 대구면, 마량면으로 한정한다)
---------------	--------------------------	--

별표 3의 광주국토관리사무소의 위치란 및 같은 표 순천국토관리사무소의 위치란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4의 부산지방항공청의 위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울촌면 신평리
울산광역시 중구 송정동
대구광역시 동구 지저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신촌동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별표 5의 철도 특별 사법 경찰대의 광주지방철도특별사법 경찰대의 위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

별표 6의 광주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광주송정센터의 철도특별사법 경찰대센터의 위치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란의 목포센터의 철도특별사법경찰대센터의 위치란 중 “전라남도”

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며, 같은 란의 순천센터의 철도특별사법경찰대센터의 위치란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9 “운전서기 1”을 삭제, 공업서기 또는 운전서기 “109”를 “110”으로 하며, “운전서기보 8”를 삭제, 공업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205”를 “213”으로 한다.

별표 9의2 “운전서기 1”을 삭제, 공업서기 또는 운전서기 “109”를 “110”으로 하며, “운전서기보 8”를 삭제, 공업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205”를 “213”으로 한다.

별표 20 중 5. 제61조제5항 관련 한시정원(준속기한: 2026년 6월 30일) “2026년 6월 30일”을 “2028년 6월 30일”로 한다.

국토교통부령 제645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중 “2026년 7월 31일”을 “2028년 7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1조(한시정원) ①・② (생 략)	제61조(한시정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④ 삭 제	
⑤ 공항건설 사업 추진 등을 위 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 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u>2026년 6월 30일까지</u>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 부에 둔다.	⑤ ----- ----- ----- --- <u>2028년 6월 30일</u> ----- -----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9]

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운전서기</u>			<u>1</u>		<u><삭 제></u>	-1	
	.		.		.		
공업서기 또는 운전서기			<u>109</u>		<u>110</u>	+1	
	.		.		.		
	.		.		.		
<u>운전서기보</u>			<u>8</u>		<u><삭 제></u>	-8	
	.		.		.		
	.		.		.		
공업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u>205</u>		<u>213</u>	+8	
	.		.		.		
	.		.		.		

[별표 9의2]

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운전서기</u>	<u>1</u>	<u><삭 제></u>	-1
•	•	•	
공업서기 또는 운전서기	<u>109</u>	<u>110</u>	+1
•	•	•	
•	•	•	
<u>운전서기보</u>	<u>8</u>	<u><삭 제></u>	-8
•	•	•	
•	•	•	
공업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u>205</u>	<u>213</u>	+8
•	•	•	
•	•	•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0]

국토교통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61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5. 제61조제5항 관련 한시정원 (존속기한: 2028년 6월 30일) • •	• • <u>5. 제61조</u> <u>제5항 관</u> <u>련 한시정</u> <u>원(존속기</u> <u>한: 2026</u> <u>년 6월 30</u> <u>일)</u> • •	• • <u>5. 제61조</u> <u>제5항 관</u> <u>련 한시</u> <u>정원(존</u> <u>속기한: 2</u> <u>028년 6</u> <u>월 30일)</u> • •	